

예타 면제는 법정 요건·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, 면제되더라도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’ 엄격한 사전·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9.21. 이데일리는 「내년 예타면제 사업, 미래대응기금에 80% 몰려」 기사에서,
 - “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138조원 중 80%에 해당하는 110조원 가량이 미래대응기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 국회가 사업 착수 전 경제성·정책성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드는 데다 사업 시작 후 규모가 늘어도 타당성을 따질 별도 절차가 없어 사전·사후 검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.”고 하면서,
 - “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 범위도 좁아질 전망이다.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자체변경 범위를 현행 20%에서 30%로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‘예타’)의 면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타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중 공공청사^{1호}, 국제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^{4호}, 법령상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^{8호},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^{10호}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.
 - 특히,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(10호 면제)은 부처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추진 필요성과 예타 면제를 심의·의결하며, 면제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아울러, 정부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’ 등 엄격한 사전·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.
-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’를 실시하여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사업 착수 이후에도 총사업비 규모가 15%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‘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’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미래대응기금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통제를 받습니다. 미래대응기금의 전체 지출규모는 물론, 개별사업별 지출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, 국회의 사전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기금의 운용이 가능합니다.
 - 기금 자체변경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,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다른 기금에 비해 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또한,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결산심사, 감사원의 감사, 기금운용평가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법령을 준수하여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강미자 (044-214-3310) 최현화 (hyunhwa@korea.kr)
	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 담당자	단 장 서기관	박성훈 (044-214-2360) 박성준 (bbakko00@korea.kr)